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	드	명	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	
정	정	서	류	(간이)투자설명서	
정	정	사	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책임, 부책임운용인력 변경 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직판 클래스 삭제 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	
효	력	발	생	일	2024년 12월 05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				
[요약정보]							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(현행과 동일)				
운용전문인력	책임,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기준일로 업데이트	* <u>책임운용전문인력: 차소윤</u> * <u>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조동훈</u>	2024.11.15기준으로 업데이트 * <u>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우람</u> * <u>부책임운용전문인력: 한경래</u>				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및 직판 클래스 삭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25%;">종류 (Class)</td> <td>집합투자기구의 특징</td> </tr> </table>	종류 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25%;">종류 (Class)</td> <td>집합투자기구의 특징</td> </tr> </table>	종류 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
종류 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					
종류 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					

	온라인슈퍼(S)	<p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	온라인슈퍼(S)	<p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(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)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
	온라인 직접판매(J-e)	<p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p>	온라인 직접판매(J-e)	<삭제>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 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<p>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<u>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</u>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<u>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합니다.</p>	<p>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<u>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</u>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<u>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</p>

[요약정보]
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<p>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</p>	<p>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현행과 동일)</p>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운용전문인력	책임,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기준일로 업데이트	* 책임운용전문인력: 차소윤 *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조동훈		2024.11.15기준으로 업데이트 *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우람 *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한경래											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u>	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u>											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및 직판 클래스 삭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집합투자기구의 특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온라인슈퍼(S)</td> <td>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u> </td> </tr> <tr> <td>온라인 직접판매 (J-e)</td> <td> 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 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온라인슈퍼(S)	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u>	온라인 직접판매 (J-e)	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집합투자기구의 특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온라인슈퍼(S)</td> <td>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u> </td> </tr> <tr> <td>온라인 직접판매 (J-e)</td> <td><삭제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 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온라인슈퍼(S)	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u>	온라인 직접판매 (J-e)	<삭제>
종류 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													
온라인슈퍼(S)	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u>														
온라인 직접판매 (J-e)	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														
종류 (Class)	집합투자기구의 특징														
온라인슈퍼(S)	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u>														
온라인 직접판매 (J-e)	<삭제>														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									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직판 클래스 삭제	- Class J-e - Class J-Pe - Class J-P2e		<삭제>										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							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직판 클래스 삭제	- Class J-e - Class J-Pe - Class J-P2e		<삭제>											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4.12.05: 책임·부책임운용인력 변경,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, 직판 클래스 삭제,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,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								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기준일로 업데이트	* 책임운용전문인력: 차소윤 *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조동훈	2024.11.15기준으로 업데이트 *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우람 *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한경래												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및 직판클래스 삭제	가. (생략) 나. 종류형 구조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55 656 1011 2029"> <thead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S</td> 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</td> </tr> <tr> <td>S-P</td> 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 (Class)	가입자격	S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	S-P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종류형 구조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50 656 1506 2029"> <thead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S</td> <td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</td> </tr> <tr> <td>S-P</td> <td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 (Class)	가입자격	S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	S-P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								
S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														
S-P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														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								
S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														
S-P	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														

					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
		S-P2	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u>	S-P2	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</u>
		J-e	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</u>	J-e	<삭제>
		J-Pe	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	J-Pe	<삭제>

		J-P2e	<p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p>	J-P2e	<삭제>								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.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<p>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합니다. (생략)</p>		<p>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 (생략)</p>									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, 직판클래스 삭제	<p>가. 매입 (1) (생략) 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S</td> <td> <p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종류 (Class)	가입자격	S	<p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p>	<p>가. 매입 (1) (현행과 동일) 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류 (Class)</th> <th>가입자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S</td> <td> <p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종류 (Class)	가입자격	S	<p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</p>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						
S	<p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p>												
종류 (Class)	가입자격												
S	<p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</p>												

		S-P	<p>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		S-P	<p>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</u></p>
		S-P2	<p>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u></p>		S-P2	<p>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(종류S-T 및 S-P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</u></p>
		J-e	<p>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</p>		J-e	<p><삭제></p>

		<p>J-Pe 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</p> <p>J-P2e 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</u></p>	<p>J-Pe <u><삭제></u></p> <p>J-P2e <u><삭제></u></p>						
		<p>(3)~(4) (생략) 나. 환매 (1) ~ (8) (생략) (9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<u><신설></u></p>	<p>(3)~(4) (현행과 동일) 나. 환매 (1) ~ (8) (현행과 동일) (9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<u>중도환매 불가</u></td> <td><u>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</u></td> <td><u>중도환매 허용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O</td> </tr> </table>	<u>중도환매 불가</u>	<u>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</u>	<u>중도환매 허용</u>	-	-	O
<u>중도환매 불가</u>	<u>중도환매 시 비용 발생</u>	<u>중도환매 허용</u>							
-	-	O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, 직판클래스 삭제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- <u>Class J-e, J-Pe, J-P2e</u>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<u>Class J-e, J-Pe, J-P2e</u> <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 - <u>Class J-e, J-Pe, J-P2e</u></p>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- <u><삭제></u>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<u><삭제></u> <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 - <u><삭제></u></p>	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, 직판클래스 삭제	<p>가. (생략) 나. 과세 (1) ~ (3) (생략)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<u>Class C-P, C-Pe, S-P 및 J-Pe 가입자</u> - 분리과세한도: <u>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</u>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 나. 과세 (1) ~ (3) (현행과 동일)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<u>Class C-P, C-Pe, S-P 가입자</u> - 분리과세한도: <u>1,5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</u></p>						

		부득이한 연금외수령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)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<u>Class C-P2, C-P2e 및 J-P2e 가입자</u>	부득이한 연금외수령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) <u>연금소득이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(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u>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<u>Class C-P2, C-P2e 가입자</u>
--	--	---	--
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직판클래스 삭제	- <u>Class J-e</u>	<삭제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
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채권평가회사 주소 변경	가. ~ 다. (생략) 라. 채권평가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한국자산평가 - 주소 및 연락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☎ 02-2251-1300 (이하 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동일) 라. 채권평가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한국자산평가 - 주소 및 연락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☎ 02-2251-1300 (이하 현행과 동일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	--

<끝>.